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

('97. 8. 1 ~ 11. 20)

민원조사특별위원회

1. 조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및 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영등포구민에게 의혹을 주고 있는 각종 민원사항을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한 후 공무원의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여 구민의 신뢰회복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0조의3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다. 1997. 7. 14. 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민원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결

3. 조사기간

1997. 8. 1(금) ~ 1997. 11. 20(목) (112일간)

4. 조사개요

- 가. 조사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 나. 조사방법 : 자료검토, 질의답변, 현장확인
- 다. 조사내용
 - ① 행정처리의 적정성·적법성
 - ② 인사행정의 공정성
 - ③ 행정처리와 관련 인·허가 과정의 민원사항

5. 조사 대상기관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의3 제1항의 해당기관
 - 3국(재무국,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
 - 7개과(재무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6. 조사특별위원회구성(9명)

위원장	간사	위원	사무보조원	비고
유남열	전병운	김동철, 박정자, 박정호 손영상, 이중식, 임창수 정종태	1명	· 위원교체('97. 9. 9) -사임 : 이용주, 조용호 -선임 : 김동철, 박정자

7. 조사실시 경과 내용(별첨-1)

8.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별첨-2)

9. 종합의견

집행부의 행정처리에서 나타난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적정성, 행정처리의 적법성, 집단 민원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 및 예방민원 사전예방 조치, 인사의 공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형식적인 서류심사 위주의 탁상행정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정에 임하는 자세가 다소 미흡함.

따라서 행정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 조성이 요망되며, 특히 재무과 계약집행절차상에 드러난 입찰과정의 개입여부나 공람공고시 공람방식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방법만 고수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별첨 - 1

대상기관	조사일시	장 소	방 법	비고
3 국 (재무국, 시민생활국, 도시정비국)	'97. 7. 14(월) 11 : 00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 안 가결 	· 구성인원 : 9 명
	'97. 7. 14(월) 15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임)중계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임시위원장:조용호) 	· 위원장 : 유남열 · 간 사 : 전병운
	'97. 7. 22(화) 11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조사특위 일정, 방법, 대상 등 논의 ○ 민원조사특위관련 자료제 출요구 ○ 다음 간담회 일자 결정 (8월4일) 	
	'97. 8. 4(월) 11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조사특위관련 업무현 황보고 일자확정 - 97.8.11(월) : 시민생활국 - 97.8.12(화) : 재 무 국 - 97.8.13(수) : 도시정비국 - 97.8.14(목) ; 도시정비국 	
시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97. 8. 11(월) 10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임)제회중계2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생활국장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 복지시설현황 및 하자보 수내역 - 식품위생법 허가기준 위 반한 업소에 대한 허가관계 	· 시민생활 국장 : 이승호

대상기관	조사일시	장 소	방 법	비 고
재무국 (재무과)	'97. 8. 12(화) 10: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일)계획중제3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국장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 공사계약관련사항 	· 재무국장 : 김종박
도시정비국 (주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97. 8. 13(수) 10: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일)계획중제4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정비국장 현황보고 및 질의·답변 - 영포건설 관련 민원 사항 -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변전소 시설 허가 사항 -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 사항 ○ 전·현직 국장, 과장, 계장 출석 답변 	· 도시정비 국장:이종현
재무국 (재무과)	'97. 8. 14(목) 14: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일)계획중제5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출석 답변 - 공사계약 관련 사항 	· (현)재무 국장:김종박 · (전)재무 국장:조남성 · (현)재무 과장:조유근 · (전)재무 과장:조수만
시민생활국 (위생과)	'97. 8. 14(목)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직 국장, 과장, 계장 출석 답변 - 식품위생법 허가기준 위반한 업소에 대한 허가관계 	· (현)위생 과장:황정태 · (전)위생 과장:공우홍

대상기관	조사일시	장 소	방 법	비 고
변전소관련 참고인 진술	'97. 8. 21(목) 14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임)제회중제6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대표 참고인 진술 및 질의·답변 영등포구 신길동 253 - 251의 변전소 설치 사항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전력관리처의 참고인 진술 및 질의·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대표: 조상돈 (김상범.전병호) 변전부장 : 정문선
사업주체 변경에 관한 참고인 진술	'97. 8. 22(금) 14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제50회(임)제회중제7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번영회 대표, 전·현직 주택조합장, 영포건설 대표의 참고인 진술 및 질의·답변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의 9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번영회 대표 : 조덕용 (상가운영회대표 : 최화진) (전)주택조합장 : 정재홍 (현)주택조합장: 양달진 영포건설대표 : 고창덕
민원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교체	'97. 9. 9(금) 10 : 00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51회(임)제3차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민원조사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임:이용주 위원,조용호위원 선임:김동철 위원,박정자위원
간 담 회	'97. 9. 23(금) 11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p>간담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교체에 따른 상건례 - 진행된 조사내용 등 설명 	

대상기관	조사일시	장 소	방 법	비 고
변전소시설에 대한 전자파 설명회	'97. 10.2(목) 11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제51회(일)의회중제8차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하여 전문가 초청 설명회 - 강사 : 김 덕 원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용공학과)	· 주민대표 참석(대표외4 인) · 한전직원 참석(과장의 2인)
간 담 회	'97.11.12(수) 16 : 3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간담회 ○ 차기 회기일자 및 출석대상 확정 - '97. 11. 18(화) : 재무국, 도시정비 국, 참고인(박영호) - '97. 11.19(수) : 재무국, 도시정비 국 ○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 작성논의	· 영포건설 · 공사계약 · 장기미준공
도시정비국 (주택과, 건축과)	'97.11.18(화) 10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제52회(일)의회중제9차 ○ 영포건설관련 민원사항 등 관계 공 무원 출석 질의·답변	· 주택과장: 양권용 · 도시정비과 장: 허찬욱 · 건축과장: 구본균 · 지적과장: 박종구 · 지적과 : 7 급 이기춘
재 무 국 (재무과)	'97.11.19(수) 10 : 3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제52회(일)의회중제10차 ○ 공사계약 관련 사항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 재무국장: 김종박 · 재무과장: 조유근
도시정비국 (건축과)	'97.11.19(수) 14 : 00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 장기미준공건축물 관련사항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질의·답변 ○ 민원조사활동결과보고서 채택	· 도시정비국 장: 이종현 · 건축과장: 구본균

· 별첨 - 2

▣ 도시계획에 따른 변전소 시설 허가사항 - 전기공급설비 변전소설치(신길동 253 - 251)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건
도시정비국 - 도시정비과	1. 전기공급설비(변전소)가 신속히 추진되어 허가 난 배경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과정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재검토
	2. 변전소설치와 관련 주민홍보의 타당성 - 설명회 개최 - 공람방법	· 사업시행 전 반드시 주민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예상민원 사전 협의 요망 (해당동 구의원 참석) · 공람공고시 형식적인 방법만 고수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안 강구 (프랑카드 게첨,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안내 등)
	3. 전자파로 인한 주민안전에 대한 피해 예상	· 언론등에서 제기한 전자파 위험을 해당 주민들이 사실로 인정하고 한전측은 위험이 없다고 하니 공정성있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함. (전문가 김덕원교수 의견 : ① 지하30~40m 정도의 지하변전소는 전자파 노출이 줄어들고 3미리가우스 이하로 노출되도 큰 위험 없음. ② 인입선 설치시 새로운 공법을 시도하여 전자파 위험 최소화 ③ 특수합금인 무메탈 사용 전자파 차단막 설치)
	4. 다른 장소로 변경(이전)	· 변전소 위치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장기미준공 건축물 관련사항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건
도시정비국 - 건축과	1. 경미한 위반 건축물을 구제 (준공)해 주는 방안	· 적법절차 이행토록 제도 및 행정지도 하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2. 감리자인 건축사와 건축업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소재 불분명 - 책임성 결여 - 제재조치 강구	· 건축서류 보완 - 필요한 서류만 징취 하고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은 과감히 버릴 것 ·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는 과정을 사전 파악하여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람 · 감리인 건축사와 건축업자의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워 줄 것
	3.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 행정처리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바람

▣ 복지시설 현황 및 하자보수 관련 사항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시민생활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1. 복지시설 이용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 복지시설에 비해 이용이 저조한 것은 홍보의 부족 및 시설미비로 사료되니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바람. · 이용율이 저조한 경로당은 통폐합하고 지원금은 형평에 맞게 지원하기 바람
	2 구립 사회복지시설이 하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 - 구립경로당 - 어린이집 - 청소년독서실 - 종합사회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은 영등포구민을 위한 것이므로 하자발생시에 즉시 보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구민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기 바람 · 양평1동 적십자경로당은 빠른 시일에 보수하기 바람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및 현장확인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에 대한 정관을 만들어 이 기준을 적용·운영되도록 할 것 · 점검일지 등을 작성하여 순찰을 확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경로당대표자 변경여부를 확인하여 조치하기 바람.

▣ 식품위생법 허가기준 위반한 업소에 대한 허가 관계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시민생활국 - 위생과	1. 위생업소 인허가 결재과정의 문제 - 결재권자인 계장·과장은 직원의 복명서에 의거 결재 - 담당자의 책임하에 처리 - 직원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재권자인 계장, 과장이 복명서, 조사표, 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한 결재과정에서 허위내용을 발견치 못한 것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추후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면 연대책임을 저야할 것임. · 허가서류에 내부를 전부 볼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 · 인허가결재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서 직접 현장 확인하기 바람.
	2. 위생업소 단속시 사전 정보 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교육을 정례화하여 책임감을 부여하기 바람.

▣ 공사계약관련 사항(안양천 정비공사 입찰)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재 무 국 - 재 무 과	1. 계약 집행 절차 - 입찰과정의 개입 - 타구공식 추천방식 - 담합의 문제 2. 사표수리와 직위해제의 형평성 - 재무과 한상특계장 - 위생과 김무성주임	· 계약의 집행절차는 시연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므로 판단되나, 아무리 제도가 좋고 보안이 잘되었다고 해도 공직자의 양심과 도덕성이 있어야 하며 보다 철저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바람. · 계약집행현장에는 계약계장과 담당 공무원만이 참석하고 있으나 중요한 계약일 경우는 과장도 수시 참석하여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 · 비위사실에 관련된 공무원징계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도록 공정하게 할 것.
	3. 안양천 정비공사 예가 결정의 타당성 - 설계금액 - 설계도서	·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설계 및 산출금액이 감사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교육 필요

▣ 사업주체변경에 관련된 사항(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48번지의 9필지)

대상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도시정비국 - 주 택 과	1. 주택조합장 변경을 서면결의로 가능한지 - 정재홍에서 양달진으로 - 법규적용 타당성	· 서면결의에 의한 것은 조합규약을 지나치게 확대해석으로 보여지며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함
	2. 택지취득허가 지연(계약집인) - 이에 따른 민원인의 손실 발생 - 법의 형평성	· 택지취득허가와 관련 관계 공무원이 법령과 규정 및 기준에 의해서 처리했다고 하나 업무를 소홀히 취급한 점이 있으며 신중히 처리하기 바람.